

부, 산업통상부, 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중소벤처기업부, 기획예산처"로 한다.

제21조제1항 · 제2항, 제23조 제1항 · 제2항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, 제24조 제1항 · 제2항, 제25조제1항 · 제2항, 제26조제1항 · 제3항, 제27조제1항 · 제2항, 제30조제1항, 제30조의2제3항, 제32조제2항, 제35조제1항 · 제2항,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37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항, 제56조제1항 · 제4항, 제64조 및 제65조제1항 · 제2항 중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부장관"으로 한다.

<473>부터 <626>까지 생략

제8조 생략